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4. 2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4. 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1999. 4. 1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가. 제안이유

○ 조례제정 당시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과태료 징수를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법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 폐지

나. 주요골자

○ "동조례 폐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 124 호
의결년월일	99. 4. 15 (제70회)

제출년월일 : 1999. 4. 2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폐지이유

○ 조례 제정 당시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과태료징수를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법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 폐지

주요골자

○ "동조례 폐지"

□ 관계법령발췌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4
-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전문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